

의 안 번호	2262	<b>[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7.(금)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미래전략국장 노선숙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4666(2023. 12. 20.)호 및 기획예산실-23411(2023. 12. 22.)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지역축제 운영·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해야 하므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운영의 공정성 확보(안 제7조)
  - (현 행) 제7조(제척) 위원회 위원이 협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- ※ 제척 미흡, 기피·회피 없음
  - (변경안) 제7조(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-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 조문규정 정비(안 제8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제 추진 위원회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지역축제 운영·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 지역문화진흥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